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사고의 현황과 대응방안 -건설 산업을 중심으로-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Response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최민규*
Mingyu Choi

〈목 차〉

- I. 서 론
 - II.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관
 - III.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안전사고의 현황
 - IV. 건설산업에서의 대응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 안전사고, 유죄판결, 대응방안, 입법론

* 용강건설 이사 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법학전문박사(SJD), grandcmg21@nate.com

I. 서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¹⁾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²⁾³⁾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⁴⁾

한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크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상이 계속되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⁵⁾

이에, 다년 간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공포 된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⁶⁾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실제 관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⁷⁾을 들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사업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점 외에도 실무에서 법리적으로

1) 권창영외16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법문사, 2022, 12면.

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5면.

3)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의 요건 중에서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건설안전사고’로 통칭한다.

4)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2면.

5) 정현희,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4면.

6)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의무나 책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한편,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최민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및 사례-건설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법, 제13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33면.

7)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2, 4면.

8) 한석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4호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있고, 곳곳에 불명확한 내용이 많아 그 해석을 놓고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업체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¹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적용된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건설’업종 회사인 ‘(주)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인 바, 건설 현장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¹¹⁾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전국의 각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여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의 모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보도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다.¹²⁾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아갈 방향과 각 기업에서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관

1.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안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인내심을 갖고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다

(통권 제754호), 법조협회, 2022, 297면.

- 9)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46호, 한국사회법학회, 2022, 520면.
- 10) 신청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1795, 본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 최민규, 앞의 논문, 234면.
- 11) 고용노동부, “(주)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5.12.); 최민규, 앞의 논문, 234면.
- 12) 김승욱, “서울 정릉동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023.4.24.자 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062600530?input=1179m>>, (2023.4.26. 최종방문): 2023.4.22. 08시 55분경, 서울시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이를 위해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¹³⁾ 여러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는 단순히 그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나 중간관리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잘못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여러 경험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회적 참사가 계속 발생하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현장의 실무책임자만 책임을 지게 되어 예방에 한계가 있고 결국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이러한 재해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로 인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이 나 공장장 등 현장 책임자들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¹⁶⁾ 그래서 현실에서와 같이 다만 직접행위자나 현장관리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만들거나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람들 혹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 권한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¹⁷⁾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기업, 공공기관)의 재해방지의무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 더 나아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면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이어지는 흐름과도 잇닿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⁸⁾ 더 나아가 안전·보건을 성숙된 기업 문화(Safety culture)로 정착시켜 작업자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¹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견해라고 본다.

13) 최명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전략과 방향”, 건설관리, 제23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22면.

14)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3면.

15)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4호(통권 제754호), 법조협회, 2022, 330면;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4면 같은 취지.

16)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6면.

17)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3면; 즉 중대재해는 많은 부분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실패, 관리시스템의 미비, 안전관리 조직구조의 결함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하급 현장관리자(현장소장, 부장) 등 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진정한 책임자인 기업과 최고경영자, 방조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측면을 불합리하다고 본다: 노상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사회법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16면 같은 취지.

18) 오대영, 앞의 논문, 331면: 인용한 원문에 ‘Environmental’로 기재되어 있는데, ‘Environment’의 오키로 판단됨.

19) 최명기, 앞의 논문, 22면.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누군가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함은 그 혼자만의 잃어버림이나 한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이다.²⁰⁾ 우리 헌법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고,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¹⁾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고,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근거로 실무자, 이를테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²²⁾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와 제11조에는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사업주(법인 포함) 등의 처벌’이라기보다는 ‘시민 등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고 본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의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²⁴⁾라고 할 것이다. 즉, 형사법적 성격의 ‘처벌 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²⁵⁾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20)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63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면.

21) 권장영외16인, 앞의 책, 4면;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22) 최민규, 앞의 논문, 236~237면.

23) 최민규, 앞의 논문, 237면.

24) 황동혁, 앞의 논문, 2면 같은 취지.

25) 고용노동부, 위의 해설집, 6면; 오대영, 앞의 논문, 327면 같은 취지.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²⁶⁾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²⁷⁾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의 대상으로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면 족하므로 산업안전법상 사업주보다 그 범위가 넓으므로 노무제공자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 것²⁸⁾으로 본다. 예를 들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사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사장도 종사자에 해당한다.²⁹⁾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개념과 그에 대응하는 ‘사업주’의 개념을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업주를 중심으로 보호대상과 의무주체를 각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와 광의의 사업주를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확장 없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도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의 내용을 곧바로 대체할 수가 없다.³⁰⁾ 이러한 보호대상에 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나 죄질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처벌수준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죄형균형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³¹⁾고 하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생각건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적용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닌 것³²⁾으로 본다.

26) 황동혁, 앞의 논문, 3면.

27) 박다혜,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민주법학, Vol.7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125면.

28) 박다혜, 앞의 논문, 125면.

29) 정진우(주 9), 앞의 논문, 522면.

30) 박다혜, 앞의 논문, 126면.

31) 정진우(주 9), 앞의 논문, 523면: 헌법재판소 2019.2.28. 선고 2016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5헌가17 결정; 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4.4.24. 선고 2011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7헌가10·16(병합) 결정 등.

32) 황동혁, 앞의 논문, 3면.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판결 사례

(1) 외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의 비교법적 측면에서, 선행된 외국의 입법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 법인과실치사법

영국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형벌은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과 형법에 의해 규율되었고,³³⁾ 이후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만한 「기업과실치사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³⁴⁾이 제정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고, 경영자 등 개인처벌은 산업보건안전법을 적용하고 있다.³⁵⁾ 여기서, 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이사, 담당자 등의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그 이어나 담당자 등도 함께 처벌된다.³⁶⁾ 영국은 형사사법체계상 1심(Crown Court)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제도를 운영하므로 기업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인 기업이 유죄인정을 하고 있다.³⁷⁾ 즉, 기업의 유죄인정이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유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의무위반과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의 인과성을 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의 유죄인정으로 양형판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³⁸⁾ 따라서 항소심 자체도 거의 없고, 1심 판결이 거의 95% 이상이며 2022년 기준으로 대법원판결은 선고된 바 없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건강 및 안전범죄,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안전과 위생위반범죄 양형기준”³⁹⁾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⁴⁰⁾ 기업범죄에 대하여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⁴¹⁾

33)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59면.

34)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pdf,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7/19/contents>>, (2023.4.30. 방문); 한편,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있어서, ‘법인과실치사법’으로 표기하는 학자도 있다: 전형배, “로벤스 보고서의 합의-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2211.10.), 고용노동부, 5면.

35)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안전보건공단, 2022, 35면 내용 정리.

36)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59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37)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26면.

38)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26면.

39)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guidelines.

40)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38~39면.

41)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35~36면 내용 정리.

2) 캐나다 : 웨스트레이 법

캐나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직장안전과 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⁴²⁾과 형법을 통해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를 규율해 왔다. 직장안전과 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요건,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부기관 소속의 조사관 등이 명령 또는 지시를 발령하거나 동법위반죄로 처벌해 왔다. 1992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탄광 폭발 사고⁴³⁾ 이후로 산업재해와 기업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2004년 제정, 「웨스트레이 법(Westray Law)」⁴⁴⁾이 시행되었다.⁴⁵⁾ 형법 제22.1조 등 및 제217.1조의 신설을 통한 입법으로 직장안전과 보건법 및 형법 제217.1조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⁴⁶⁾ 즉, 처벌규정 적용대상자가 ‘자(사람)’에는 공공기관, 비정부조직, 법인, 기업, 민간기업, 자선단체, 사회, 파트너십,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협회가 포함되어 기업의 형사책임을 모든 조직으로 확대시켰다.⁴⁷⁾

3) 독일 :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현재,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없고, 1996년 제정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칭하는 「근로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개선을 위한 근로보호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보호법;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7. August 1996, BGBl. I S. 1246”: “Arbeitsschutzgesetz”)⁴⁸⁾에서 일부 조항에 형사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없다.⁴⁹⁾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없고 단지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뿐이다.⁵⁰⁾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분야(제14조)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업주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그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배임, 횡령 등 형사책임을 진다고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⁵¹⁾ 이러

42)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Authorised Version No. 037).pdf,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occupational-health-and-safety-act-2004/037>>, (2023.4.30. 방문).

43)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87~188면.

44)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87면: 공식 명칭은 「Bill C-45,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of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45) Westray Bill (Bill C-45) - Overview.pdf, <<https://www.ccohs.ca/oshanswers/legisl/billc45.html>>, (2023.4.30. 방문).

46)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53면 내용 정리.

47)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54면 내용 정리.

4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schg/BJNR124610996.html>>, (2023.4.30. 방문).

49)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93~94면 내용 정리.

50)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98면 내용 정리.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2)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외국의 적용 사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유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 중에서, ‘건설’ 산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표 1 내지 3>참조).

1) 영국

<표 1> 영국 건설 안전 사망 사고의 처벌 사례

사례 (연도)	사실관계	처벌대상		비고
		법인처벌	개인 (경영진 등)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 (2011) ⁵²⁾	근로자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험광구에 혼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385,000 파운드 벌금을 10년간 38,500 파운드 분할 납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위반죄의 기소는 배심원들의 혼동을 우려하여 공소취소)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제 37조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말기암으로 인하여 소송중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최초 적용 사례
JMW Farms Limited 사건 (2012) ⁵³⁾	근로자가 지게차 금속통 내부를 세척하다가 추락하고, 그 위로 쓰레기통이 떨어져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피고회사의 유죄인정(guilty plea)으로 벌금액 25% 감액 187,500파운드 벌금을 6개월 유예납부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회사의 유죄인정에 의하여 재판 전 기각	두 번째 적용 하급심 사례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2016) ⁵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부지의 보수공사 중 금속난간이 고정되지 않아서 다툼을 하던 두 명의 근로자가 무너진 임시울타리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추락한 두 명에 대한 두 건의 기업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업과실치사죄 각 25만 파운드씩 50만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50,000파운드	-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2월 시행된 양형 기준이 최초 적용된 사례. 공표명령 부과

51)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98~99면 내용 정리.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 (2021) ⁵⁵⁾	근로자가 산업시설 지붕에 올라갔다가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 2005년 작업장 고도규정(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위반죄 산업보건안전법 제33조 위반죄 3년간 480,000 파운드 벌금 납부	산업보건안전법 제 37조 위반죄,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 이사 1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와 중과실치사죄 무죄, 다른 한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소 부분은 법인과실치사죄 유죄인정 조건 취하	-
---	--------------------------------------	---	---	---

2) 캐나다

〈표 2〉 캐나다 건설 안전 사망 사고의 처벌 사례

사례 (연도)	사실관계	처벌대상		비고
		법인처벌	개인 (경영진 등)	
Scrocca사건 (R. C. Scrocca, 2010 QCCQ 8218) (2010) ⁵⁶⁾	2006년 6월, Pasquale Scrocca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포크레인(굴착용 기계)으로 언덕을 주행 중 그의 직원과 충돌하여 사망	-	30년 동안 회사의 기계를 완전히 검사하지 않은 것은 표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 판사는 또한 기계의 실제 결함에 대한 무지의 항변이 30년 이상 방치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2년 징역형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조건을 존중” 선고	Scrocca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은 그의 기계에 합리적 수준의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52)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https://app.croneri.co.uk/law-and-guidance/case-reports/r-v-cotswold-geotechnical-holdings-ltd-2011-ewca-crim-1337>>,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75면 내용 정리;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76~178면 같은 취지.

53) Queen v J M W Farm Ltd (2012 NICC 17), <<https://www.judiciaryni.uk/judicial-decisions/2012-nicc-17>>,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75면 내용 정리;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78~180면 같은 취지.

54) William Allison, “First firm to be sentenced under new corporate manslaughter sentencing guidelines is fined £550,000”, 4 October, <<https://www.dacbeachcroft.com/en/gb/articles/2016/october/first-firm-to-be-sentenced-under-new-corporate-manslaughter-sentencing-guidelines-is-fined-550-000/>>,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77면 내용 정리.

55) “HHJ Gilbert QC sentence remarks: R -v- Lion Steel”,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hhj-gilbert-qc-sentence-remarks-r-v-lion-steel.pdf>>,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76면 내용 정리;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180~182면 같은 취지.

<p>Kazenelson 사건(R. v. Kazenelson, 2015 ONSC 36) (2015)⁵⁷⁾</p>	<p>2009년 12월 24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승강기 탑승시 낙하안전장치가 모자란 상황임에도 현장감독관이 이를 알면서도 근로자들을 탑승시켜서 안전장치가 없었던 4명의 직원이 100피트 이상 추락하여 사망. 안전장치 있던 근로자는 가벼운 상해</p>	<p>-</p>	<p>왕립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투옥 기간이 각 사망에 대해 4년에서 5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피고가 12개월 형을 복역할 것을 제안. 법원은 제안된 형량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고 대신 각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로 연장</p>	<p>-</p>
<p>R. v. Stave Lake Quarries Inc., 2016 BCJ No.2583사건 (2016)⁵⁸⁾</p>	<p>채석작업장에서 무면허로 암석운반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에어 브레이크 차량을 경사면 상단 근처에 주차하였으나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진행하자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막고자 하였으나 전복되어 사망</p>	<p>Stave Lake Quarries Inc.(SLQ)에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100,000의 벌금과 \$15,000의 피해자배상금을 부과</p>	<p>-</p>	<p>형법 제217.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판례</p>
<p>R. v. Vadim Kazenelson, 2016 ONSC 25사건 (2016)⁵⁹⁾</p>	<p>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고층빌딩의 콘크리트 발코니 수리작업의 일환으로 14층 외벽 작업 중 안전난간의 붕괴로 추락하여 사망</p>	<p>-</p>	<p>Metron 관리자 Vadim Kazenelson에게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4건 및 상해를 초래한 형사과실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3년 6월의 자유형을 선고. Kazenelson은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p>	<p>Metron 관리자인 Vadim Kazenelson에게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4건 및 상해를 초래한 형사과실 1건으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사건</p>

56)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84~185면 내용 정리; 권창영외16인, 앞의 책, 200면 같은 취지.

57) R. v. Vadim Kazenelson, 2015 ONSC 3639: <<https://jbrucemcmeekinlaw.com/wp-content/uploads/2015/07/R.-v.-Kazenelson.pdf>>,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85면 내용 정리; 권창영외 16인, 앞의 책, 201면 같은 취지.

3) 독일

〈표 3〉 독일 건설 안전 사망 사고의 처벌 사례

사례 (연도)	사실관계	처벌대상		비고
		법인처벌	개인 (경영진 등)	
Goldberg시 건물붕괴 사건 (2008) ⁶⁰⁾	Mecklenburg-Vorpommern주 Goldberg시 소재하는 학교의 고층 부속건물 수리작업에서 부속건물 1층을 지탱하고 있던 벽이 붕괴. 5명 사망, 5명 상해	-	건축업자. 고의 건축위험야기로 인한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경합 인정. 자유형 1년 선고	-
코헨 기차역 (Bahnhof Kochen) 굴삭기 사건 (2014년) ⁶¹⁾	선로보수공사를 하던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 소속의 회사 vs 기차역 승강장에서 사고당한 피해자 소속의 회사: 굴삭기 후진 중 피해자 부딪혀 사망	-	피고인은 과실치사죄로 120일의 벌금형(1일정액 30유로)을 선고. 피고인의 형 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로진입 전에 피고인과 협의하지 않은 것: 피해자의 과실
아헨 (Aachen)시 콘크리트벽 붕괴사건 (2010년) ⁶²⁾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텅빈 공간에 있는 가로버팀목을 제거중 피해자 덮쳐 사망	-	대표이사, 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문가. 짧은 시간 동안 단순한 청소를 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감독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음	-
Heidelberg시 건축마감재 폭발 사건 (2011년) ⁶³⁾	건물지하층의 배수 및 밀폐작업을 위탁 작업중, 가격이 싼 마감재가 폭발. 4명 부상/물적 손해	-	대표이사. 120일 벌금형 선고	보호조치의 무위반

58) westray-3-eng.pdf, Criminal liability for workplace deaths and injuries Sentencing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ttps://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westray/westray-3-eng.pdf>>. (2023.5.1.방문);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87면 내용 정리.

59)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88면 내용 정리.

60) BGH, Urteil vom 13.11.2008 - 4 StR 252/08;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06~110면 내용 정리.

61)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172-173;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15면 재인용.

62)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225-229;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23면 재인용.

63)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199-204;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앞의 연구보고서, 137면 재인용.

Ⅲ.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안전사고의 현황

1. 건설산업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1) 산업 전반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이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참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산업현장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써 법의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표 4〉 202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⁶⁴⁾

구분	2022.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65	0.63	0.02	3.2
- 사고재해율	0.53	0.53	0.00	0.0
- 질병발생률	0.11	0.11	0.00	0.0
○ 사망만인율(‰)	1.10	1.07	0.03	2.8
- 사고사망만인율	0.43	0.43	0.00	0.0
- 질병사망만인율	0.67	0.65	0.02	3.1
○ 재해자수(명)	130,348	122,713	7,635	6.2
- 사고재해자수	107,214	102,278	4,936	4.8
- 질병재해자수	23,134	20,435	2,699	13.2
○ 사망자수(명)	2,223	2,080	143	6.9
- 사고사망자수	874	828	46	5.6
- 질병사망자수	1,349	1,252	97	7.7
○ 근로자수(명)	20,173,615	19,378,565	795,050	4.1

64) 고용노동부, 2022.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 16면: 다만, 1)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가 포함되었고, 2) 재해자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되었으며, 3)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추정금액은 2019년도에 27.6조원, 2020년도에 30조원, 2021년도에 32.3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는 물론이고 각 산업계 모두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본다.⁶⁵⁾

(2)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현황

<표 5> 202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재해’사고 발생 통계에서,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9가지 산업군으로 분류하였고, 총 재해자수는 130,348건, 총 사망자수는 2,223명이다. 여기서,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31,245건(비율 : 24.0%), 사망자수는 539명(비율 : 24.2%)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산업군과 비교할 때, ‘제조’업을 제외하고 월등하게 사고 수치가 많은 상황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각 공사 건 별로 중소 규모의 하청업체가 상당히 많으며 각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단일 업종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와 비례하여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표 5> 2022년 업종별 재해사건 및 사망자 현황⁶⁶⁾

(단위 : 명, %)

구 분	2022. 1~12월			전년 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총 계	20,173,615	130,348	0.65	19,378,565	122,713	0.63	7,635	0.02
		2,223	1.10		2,080	1.07	143	0.03
광 업	9,850	3,873	39.32	10,257	3,336	32.52	537	6.80
		453	459.90		349	340.26	104	119.64
제 조 업	3,988,609	31,554	0.79	3,959,780	31,709	0.80	-155	-0.01
		506	1.27		512	1.29	-6	-0.02
건 설 업	2,494,031	31,245	1.25	2,378,751	29,943	1.26	1,302	-0.01
		539	2.16		551	2.32	-12	-0.1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9,103	129	0.16	79,791	130	0.16	-1	0.00
		3	0.38		4	0.50	-1	-0.12

65)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산업재해, “연도별 경제적 손실추정액”, ① (정의)산업재해로인한 경제적 손실액, ② (계산식)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업재해보상금 지급액)×5배: 통계 자료 정리, <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47#>, (2023.4.28. 방문).

66) 고용노동부, 앞의 2022.12월말 통계자료, 17면 내용 정리.

운수창고 통신업	1,071,768	12,468	1.16	993,678	10,091	1.02	2,377	0.14
		198	1.85		158	1.59	40	0.26
임업	124,991	968	0.77	110,395	946	0.86	22	-0.09
		13	1.04		13	1.18	0	-0.14
어업	5,565	59	1.06	4,955	74	1.49	-15	-0.43
		1	1.80		3	6.05	-2	-4.25
농업	84,180	682	0.81	78,999	668	0.85	14	-0.04
		12	1.43		11	1.39	1	0.04
금융 및 보험업	815,562	666	0.08	781,685	408	0.05	258	0.03
		16	0.20		18	0.23	-2	-0.03
기타의 사업	11,499,956	48,704	0.42	10,980,274	45,408	0.41	3,296	0.01
		482	0.42		461	0.42	21	0.00

한편, 2022년도의 경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근소하나마 약간 감소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전반에 적용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건설’산업에 있어서 그 적용할 경우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⁶⁷⁾고 할 것이다.

(3)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2016년 안전보건공단(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KOSHA GUIDE G-83-2016)을 제정하여 건설 산업 실무에서 적용해오고 있으며,⁶⁸⁾ 이 지침에서 분류한 6가지의 재해유형⁶⁹⁾에 따라 2022년도에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유형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02명의 사망자 중 i) 떨어짐(215명/53%), ii) 부딪힘(48명/12%), iii) 무너짐(30명/7%), iv) 물체에 맞음(22명/5%), v) 깔림·뒤집힘(22명/5%), vi) 그밖의 형태(65명/16%)로 나타났다.⁷⁰⁾

통계 수치를 보건대, 공사 현장의 작업대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⁷¹⁾ 즉,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시공 중인 건축물의 외벽이나

67) 최민규, 앞의 논문, 241면 같은 취지.

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번호 - ‘G-83-2016’, 공표일자, (2016.6.30.),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Detail.do>>, (2023.4.27. 방문).

69) 1)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구 명칭: 추락), 2)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3)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4)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5)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비래), 6) 기타: 재해의 발생 경위가 확인이 되나, 상기의 분류항목에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앞의 2022.12월말 통계자료, 33면; 조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2022, 19~21면 내용 정리.

70) 안전보건공단,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pdf, 2023, 6면.

71) 2021년의 경우에도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248명, 59%)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 통계로 보는 2021년 산업재해.pdf, 2022, 6면.

난간 등 높은 위치에서 안전용 줄(Rope)이 풀리거나 실족하는 등의 원인으로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⁷²⁾ 심지어, 지하시설의 시공을 위하여 땅을 파서 생긴 공간으로 건설 현장의 관리자인 감리단장이 지상으로부터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⁷³⁾ 이에 대하여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의 유형 중 떨어짐에 의한 것이 많은 이유로 ‘수직적 작업 활동’이 많은 건설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다는 견해⁷⁴⁾가 제기된 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각종 건설장비가 작동 중에 작업자의 머리, 허리 등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굴삭기의 샵을 회전할 때, 근로자의 머리를 치는 경우, 덤프 트럭이 회전하는 중에 차량의 후미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서 사망하는 경우, 로울러의 주차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장착하지 않아 로울러가 움직이면서 작업자를 치어서 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사건

최초로 적용된 사건은 앞의 서론에서 소개한 바 있는 바, 2022년 1월 29일 ‘(주)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인한 매물 사망사고이다. 이후 2022년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⁷⁵⁾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022년 2월 21일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3~4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의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⁷⁶⁾ 2022년 10월 21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슬래브가 붕괴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

72) 최민규, 앞의 논문, 244면.

73) 김성수, “경기 양주 하수관로 공사 중 땅 꺼짐…현장 감리단장 사망”, KBS 뉴스, 2022.10.28.자 기사,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9329>>, (2023.4.29. 방문).

74) 이정환·정영철, “안전관련 법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입법정책적 과제-CM/감리관련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3권 제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78면.

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보도참고자료, (2022.2.8.), 1~2면: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증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76)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도자료, (2022.11.10.), 1~2면 내용 정리; 권정두, “쌍용씨앤이 산재 사망사고, 폄지 않은 시선 받는 이유”, 2022.2.28.자 기사, 시사위크,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415>>, (2023.4.29. 방문).

여 치료 중인 사고가 발생하였다.⁷⁷⁾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면 ‘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이후 전국의 각 건설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보고되어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 하급심 판결 사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진행되어 온 사건들 중에서, 2023년 4월에 최초로 2건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이하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2023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당연히 2심 이상의 판결 사례는 없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1호 판결 사례

가. 사건개요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 기업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⁷⁸⁾한 바 있다.

나. 판시사항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⁷⁹⁾ 즉, 원청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된 원청 소속 현장 책임자 및 하청업체 소속 현장 책임자보다 무겁게 처벌됐다.

77)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보도참고자료, (2022.10.21.), 1~2면.

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됨.

79) 한수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2023.4.6. 자 기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621&kind=AA04>>, (2023. 4.29.방문) 내용 정리.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2호 판결 사례

가. 사건개요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C씨가 리모컨으로 1.2톤 무게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벨트가 끊어져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 철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1월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2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⁸⁰⁾

나. 판시사항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⁸¹⁾ 법원은 “한국제강의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3) 소결 : 판결내용의 검토 및 향후 전망

1) 1호 판결 사례

우선,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해당 하청 업체의 ‘대표’ 뿐만 아니라 원청 업체의 ‘대표’까지도 적용되

80) 김소영, “‘중대재해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법정구속”, 2023.4.26.자 기사,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097>>, (2023.04.26. 최종방문).

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이후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2023.4.27.자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확인함, 법원 나의 사건 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023.4.29. 방문).

며, 중대재해 발생과 기업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간의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이를 자백함에 따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여부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⁸²⁾도 있다.

2) 2호 판결 사례

우선, 이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즉,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을 확인하였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상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까지 업무 수행을 평가해야 하는 것처럼 실시한 부분이 있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타 법인 소속원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향후 사법기관의 후속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⁸³⁾는 견해가 제기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각 법원에서 재판 중이므로 이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은 기업 측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점에 대하여 기업 측이나 대표자 측의 형량감경 등의 선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⁸⁴⁾ 일벌백계할 것임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며, 향후 각 기업이나 대표자는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2) 법무법인 율촌, “수사 및 판결 사례 등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정리”, Yulchon Legal Update, (2023.04.), 2~3면.

83) 구교웅외9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2호 판결 선고”, 2023.4.28.자 기고,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2023.4.29. 방문).

84) 법원은 피고인 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2022.3.16.)하여 준비 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정상참작 해 달라.”는 변소에 대해, “동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A사는 시행유예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에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고 유족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인 A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하게 된 것이다.

IV. 건설 산업에서의 대응방안

1. 현행 법령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한계

첫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앞의 안전사고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자의 다수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상의 취지와 건설 현장에서의 발생 현황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의 부족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당장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⁸⁵⁾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그 입법동기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강제하고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내용이어서 불필요한 경영위축만 야기할 뿐 효과적인 재해방지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⁸⁶⁾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개념 및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⁸⁷⁾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등을 지키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32조 제1항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의 경우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1심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을 두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⁸⁸⁾하면서, 판사 1인이 심리

85)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정책 혁신방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고용노동부, (2022.11.10.), 37면.

86) 한석훈, 앞의 논문, 301면.

87) 오대영, 앞의 논문, 336면.

88)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아목.

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토록 규정하고 있다.⁸⁹⁾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넷째, 사고 발생 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은 당해 사건 수사의 주무부서로서 가급적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검찰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인과관계 등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서는 각각의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과연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입법론적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검토해 보고 사건 해결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대응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입법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

(1)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적용 제외에 대한 개정법률안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9.1%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⁹⁰⁾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 제외 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⁹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게 된 입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제3조의 규정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법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를 구분하여 해석할 만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다⁹²⁾고 본다. 예를 들어, 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⁹³⁾되어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89) 임동희, “중대사고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토록 법개정 추진”, 2023.4.11.자 기사, 안전저널, 2023,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3>>, (2023.4.30. 방문) 내용 정리.

90) 안전보건공단, 앞의 2022년 산업재해, 3면: 전체 사망자 874명 중 5인 미만은 342명.

9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469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2.2.8.); 의안번호 1454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022.1.25.)같은 취지.

92)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40면 같은 취지.

9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456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2.1.26.); 의안번호 149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2022.3.24.)같은 취지.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⁹⁴⁾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⁹⁵⁾되어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며,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 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⁹⁶⁾한 바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의 확보가 어렵고(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25.3%)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⁹⁷⁾

생각건대, 다수의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전담 안전관리인·보건관리인 등을 채용해서 배치 및 운용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간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래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고, ‘5인 미만의 사업장 등’에서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장 등에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 것과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경영책임자’ 책임범위에 대한 판결과 개정법률안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법원의 1심 판결 사례 2건에서, 각각 대표자 및 현장소장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1건의 경우 대표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

94) 신승욱·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전면개정판), 박영사, 2022, 54면: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 22859판결.

9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1.7.).

96) 국가인권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보도자료, (2022.1.26.), 2면 내용 정리.

97) 김보현,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2022.10.5.자 기사,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24>>, (2023.4.30 방문).

에, 경영자 측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갖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라고 비판하며, “대표이사 실행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였다.⁹⁸⁾

반면, 노동계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행을 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다. 검찰의 구형과 판결 양형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는 논평⁹⁹⁾을 하여, 경영자 측과 대비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앞에서 살펴 본 영국의 유죄인정(Guilty Plea)제도가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상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 ‘감경’ 요소와 유사한 법리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처벌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에 국회에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¹⁰⁰⁾ 즉,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안은 경영자 측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책임의 소재나 그 범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토록 하는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무관할은 사건의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단독부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은 여전히 중대재해에 대한 규범 인식이 미흡하여, 중대재해가 단지 산업재해의 일환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각자의 경험이나 법리를 합의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편차를 줄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독부 판사는 1명이

98) 민정희,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행…경영계 ‘가혹’ 노동계 ‘엄중 심판’”, 2023.4.26.자 기사,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281>>, (2023.4.30. 방문).

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노동 입장, 2023.4.26.자 논평, 2023.

10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2.6.17.).

라 판결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¹⁰¹⁾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¹⁰²⁾

생각건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근무 중 숨진 사건을 그 자체로 엄중하게 보고 중대재해 사건을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평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견해를 반영한 개정법률안이 발의¹⁰³⁾되었고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앞의 2건의 1심 판결 사례에서와 같이,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소될 정도의 사건인 경우에는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될 가능성이 높다¹⁰⁴⁾고 본다. 따라서 1심 재판과정에서부터 합당한 법적용을 하도록 하여, 법원 입장의 행정편의 주의적 운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판사에 배당하였다가 합의부로 변경하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원안의 일부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발의안의 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2. 해결론 : 사고 발생 시 법률적인 대응

(1)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침 수행 근거의 제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법 준수를 위한 형식적 사항이 강조되는 경향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는지 여부가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⁵⁾

생각건대, 형식상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하였다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인 사업 및 안전보건사무를 총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지침들을 갖추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야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101) 홍준표, “중대재해 재판에 ‘단독재판부’ 심리 적절성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3.5.30.자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80>>, (2023.5.30. 방문).

102)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개정 2023.2.7. [재판예규 제1843호, 시행 2023.3.1.]: 법원 예규에 따르면 단독 사건이라도 재정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즉, i)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ii)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iii)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iv)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v)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vi)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10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1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023.4.10.).

104) 신승욱·김형규, 앞의 책, 211면.

105) 법무법인 율촌, 앞의 자료, 3면.

충실히 이행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2년 이미 영국에서 연구가 수행되어 법제에 반영시킨 바 있는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¹⁰⁶⁾의 제안 내용을 참고해 볼 것을 제시한다. 즉, 로벤스 보고서는 ‘자율 규제’라는 철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고, 여기서 자율 규제란 정부가 제시한 표준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 이외에도 정부의 법령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사업주 스스로 입안하여 시행하면 이를 법령 준수로 인정한다는 뜻이다.¹⁰⁷⁾ 또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율 규제를 토대로 운영되는 지침의 준수 여부가 곧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상의 실무에서 이행하여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수사 과정 중 대응 방안

사고 발생 시, 통상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 및 경찰의 수사관들이 즉시 현장에 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참고인¹⁰⁸⁾ 진술 청취 등의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도 진술조서의 경우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¹⁰⁹⁾ 이때,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통해 검토를 한 후 제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¹¹⁰⁾ 또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참고인 진술 청취의 경우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관련 사항은 내부규정 등의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답변하여야 한다.¹¹¹⁾ 그리고 수사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참고인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향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양형요소를 검토해 보건대, 피해자 측과 원만한 대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 불원서’ 등의 합의를 도출¹¹²⁾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¹¹³⁾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한다.

106) 전형배, 앞의 발표문, 5면.

107) 전형배, 앞의 발표문, 34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의 사례에서 법원은 안전보건규칙을 해석 및 적용하면서 명문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오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0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때, 수사 절차상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한다;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9, 56면.

109) 신동운, 앞의 책, 57면.

110) 강정석,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등, 배포자료, 법무법인 세종, 2023, 12면.

111) 강정석, 앞의 자료, 13면.

112) 강정석, 앞의 자료, 14면.

113) 신승욱·김형규, 앞의 책, 225면.

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내외적인 입법배경과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서, 건설 산업 현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추락’유형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 건설 현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히, 2023년 4월에는 기소된 2건의 1심 형사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중 1건에서는 기업의 대표자가 법정 구속이 되었다. 이에, 경영자 측에서는 형벌이 과도하여 기업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좀 더 중한 처벌을 하여 사업자 또는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황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입법론 측면과 해결론 측면에서의 방안을 제시한다. 입법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검토를 제시하고, 해결론 측면에서 기업의 안전보건체계의 지침 수행을 제시하며 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이 2024년 5월 29일임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령의 문제점 내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의 유연성 있는 논의과정을 통하여 수범자와의 갈등을 감소하고, 건설 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 산업에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안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창영외16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법문사, 2022.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2.
- 김혜경·이진국·도종진·차종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안전보건공단, 2022.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9.
- 신승욱·김형규, 중대재해처벌법(전면개정판), 박영사, 2022.
-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 노상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사회법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 박다혜,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민주법학, Vol.7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 오대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4호(통권 제754호), 법조협회, 2022.
- 이정환·정영철, “안전관련 법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입법정책적과제-CM/감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3권 제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 조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2022.
- 전형배,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고용노동부, 2022.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정책 혁신방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고용노동부, 2022.
- _____,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46호, 한국사회법학회, 2022.
- 정현희,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2022.
- 최명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건설회사의 전략과 방향”, 건설관리, 제23권 제2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 최민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및 사례-건설산업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제13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한석훈,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에 관한 소고(小考)-중대산업재해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71권 제4호(통권 제754호), 법조협회, 2022.
- 황동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63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강정석,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 등, 배포자료, 법무법인 세종, 2023.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도자료, (2022.11.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보도참고자료, (2022.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보도참고자료, (2022.10.21.).
-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2.
- _____, 2022.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
- _____,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
- _____, (주)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발표, 보도자료, (2022.5.12.).
- 국가인권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보도자료, (2022.1.26.).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1.7.).
- _____, 의안번호 1454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022.1.25.).
- _____, 의안번호 1456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2.1.26.).
- _____, 의안번호 1469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2.2.8.).
- _____, 의안번호 149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2022.3.24.).
- _____, 의안번호 160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2.6.17.).
- _____, 의안번호 185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2022.11.28.).
- _____, 의안번호 21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2023.4.10.).
- 법무법인 율촌, “수사 및 판결 사례 등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정리”, Yulchon Legal Update, (2023.04.).
- 안전보건공단, 통계로 보는 2021년 산업재해.pdf, 2022.

- _____,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pdf, 2023.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3.4.26.자 논평, 2023.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bschg/BJNR124610996.html>>.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pdf,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7/19/contents>>.
- HHJ Gilbert QC sentence remarks: R -v- Lion Steel.pdf,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hhj-gilbert-qc-sentence-remarksr-v-lion-steel.pdf>>.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Authorised Version No. 037).pdf,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occupational-health-and-safety-act-2004/037>>.
- Queen v J M W Farm Ltd (2012 NICC 17).PDF,
<<https://www.judiciaryni.uk/judicial-decisions/2012-nicc-17>>.
-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https://app.croneri.co.uk/law-and-guidance/case-reports/r-v-cotswold-geotechnical-holdings-ltd-2011-ewca-crim-1337>>.
- R. v. Vadim Kazenelson, 2015 ONSC 3639.pdf,
<<https://jbrucemcmeekinlaw.com/wp-content/uploads/2015/07/R.-v.-Kazenelson.pdf>>.
-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 Westray Bill (Bill C-45) - Overview.pdf,
<<https://www.ccohs.ca/oshanswers/legisl/billc45.html>>.
- Westray-3-eng.pdf, Criminal liability for workplace deaths and injuries Sentencing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ttps://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westray/westray-3-eng.pdf>>.
- William Allison, First firm to be sentenced under new corporate manslaughter sentencing guidelines is fined £550,000.pdf, 4 October 2016,
<<https://www.dacbeachcroft.com/en/gb/articles/2016/october/first-firm-to-be-sentenced-under-new-corporate-manslaughter-sentencing-guidelines-is-fined-550-000/>>.

ABSTRACT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Response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Mingyu Choi

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in particular, the most deaths occurred in the ‘fall’ type.

In April 2023, regarding two criminal first-instance trial cases, the courts all sentenced guilty, and in one cas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CE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as arrested. In response, the management side expresses the opinion that the punishment is excessiv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rporate management will shrink, while the workers side(Union) argu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or manager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vier punishment.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rationally, we present a plan in terms of legisl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n other words, we present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a safety and health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must be dealt with reasonably.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drastically decrease and safety cultur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Key Words :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struction Industry, Safety Accidents, Conviction, Response, Legislation